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광천 의원)

의안 번호	329
----------	-----

발의연월일: 2021년 03월 03일

발 의 자: 지광천 의원

찬 성 자: 전수일, 이주용, 심현정의원

1. 제안이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 근거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사항 규정 (안 제4조)

나.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 (안 제5조)

다. 감염병 예방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감염병전문가 교육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반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1. 02. 08. ~ 2021. 02. 28.(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1. 01. 26. ~ 2021. 02. 01., 아래 참조

조 례 안	<p>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u>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u> 7. <u>환경미화원,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u>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제 출 의 견	<p style="text-align: center;">진료지원과 - 무료삭제, 1호,6호,7호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를 넣지 않아도 ‘예산지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 포함되며 · 제1호, 6호, 7호는 제8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추가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 됨. · 법정 예방접종 외 감염병 발생으로 임시 예방접종 시 질병관리청의 접종대상범위를 따르며, 그 외 추가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 됨
의 회 의 견	<p style="text-align: center;">[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대상자의 비용없이 지원한다는 <u>무료를 넣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u> · 조례안 제5조는 군수의 임시예방접종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것으로
1호부터 7호의 대상자들은 예시, 상징적이며,
제8호는 군수는 인정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군수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하여
집행부는 대상자 선정에 재량권이 큼
1호, 6호, 7호는 감염병 취약 고위험 직군이긴 하지만
해당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제6호, 제7호는 제8호에 포함하도록 함.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협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감염병 대비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 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시행일 : 2021. 6. 16.]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2의2.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3의2. 「의료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지광천 의원
연락처	(033) 330 -2505